

5. 首都圈整備計劃法施行令改正令 (案)立法豫告

建設部公告 第1994-39號, 1994. 2. 2

1. 개정취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전반적으로 개정('94. 1. 7. 법률 제4,721호)됨에 따라 3개 권역의 범위를 설정하고, 권역별 행위 제한 내용을 조정하며, 과밀부담금제도 및 총량규제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사항을 정하는 등 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재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를 대학, 공장, 국가기관, 업무용·판매용 건축물, 연수시설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정부투자기관등 공공단체는 국무총리훈령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공공단체를 인구집중유발시설에 추가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사업계획수립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규모개발사업의 규모를 택지·공업용지조성사업은 1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관광지조성사업은 3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함.

나.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를 설정함.

- 과밀억제권역은 현재의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중 서울로부터 반경 40킬로미터이내의 시급지역으로 함.
-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질보전과 관련하여 한강수계 상류의 본류 및 지류지역으로 함.
-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과 자연보전권역이외의 지역으로 함.

※권역 설정안

과 밀 역 제 권 역	성 장 관 리 권 역	자 연 보 전 권 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14개시 • 서울특별시 • 인천직할시 (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함) • 의정부시 • 구리시 • 미금시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 시흥시 (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함)	경기도 5개시, 12개군 (3개군은 일부지역) • 동두천시 • 안산시 • 오산시 • 송탄시 • 평택시 • 연천군 • 파주군 • 강화군 • 용진군 • 포천군 • 양주군 • 남양주군 (외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면에 한함) • 김포군 • 용인군 (기흥읍, 구성면, 수지면, 남사면, 이동면, 원삼면에 한함) • 화성군 • 평택군 • 안성군 • 인천직할시중 남동유치지역 • 시흥시중 반월특수지역	경기도 8개군(3개군은 일부지역) • 가평군 • 양평군 • 여주군 • 이천군 • 광주군 • 용인군 (용인읍, 포곡면, 모현면, 외사면, 내사면에 한함) • 남양주군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에 한함) • 안성군 (일죽면에 한함)

다. 권역별 규제내용을 정함

- 과밀억제권역에는 국토균형개발 시책 추진을 위하여 인구집중유발시

설의 설치를 억제하되, 수도권외의 중추기능·국제기능수행에 필요한 공공청사등 입지가 불가피한 시설은

허용토록 함.

- 성장관리권역에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설치를 규제하되, 국제경쟁력 강화와 수도권 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하여 수도권 입지가 필요한 연수시설·공공청사는 설치를 허용하고, 공업지역에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며, 중소기업택지·관광지조성사업은 규제치 않도록 함.
- 자연보전권역에는 한강수질 보전등을 위하여 택지·공업용지·관광지조성등 개발사업과 인구집중유발시설 설치를 억제하며, 주민의 생활기반 조성에 필요한 소규모개발사업의 허용범위는 일부 조정하되 환경보전시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도록 함.

라. 업무용·판매용건축물과 공공청사의 건축에 대하여 과밀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부과대상지역은 부과대상건축물의 대부분이 건축되고 있는 서울특별시로 함.
- 부과대상 건축물의 규모는 현행 규제대상규모 수준으로 하여 업무용 건축물은 연면적 2만5천제곱미터 이상, 판매용건축물은 1만5천제곱미터 이상, 공공청사는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함.

- 부담금의 감면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부담금을 면제하고, 도심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개발관련 건축물에는 부담금의 30%를 감면하며, 도심공동화 및 주차난해소에 필요한 주거용 및 주차장용 건축부분과 근린생활시설 규모수준인 5천제곱미터 만큼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함.

마. 공장의 신·증설에 대하여 총량규제 제도를 적용토록 하기 위하여 수도권 및 시·도별 총건축허용량과 제도운영 지침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하며, 시·도지사는 운영지침에 따라 지역별 총허용량을 결정토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적합하게 공장설립허가를 실시토록 함.

3. 이 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4년 2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부장관(참조 : 수도권계획과장, 전화번호 : 503-734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